

# 『御製警民音』과 한글 율음의 의의

이영경\*

- 
- |                        |                   |
|------------------------|-------------------|
| 1. 머리말                 | 4. 한글율음의 국어사적인 의미 |
| 2. 『어제경민음』의 반포 배경 및 경위 | 5. 맺음말            |
| 3. 한글율음으로서의 언어적 특징     |                   |
- 

초록: 이 글은 한글 율음 『御製警民音』의 자료적 가치에 주목하고 그 국어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제경민음』은 영조가 백성들에게 禁酒를 촉구하기 위해 한글로 지어 내린 율음으로, 현전하는 한글로 된 다른 율음들이 모두 한문을 언해한 것인 데 비해 처음부터 한글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자료이다. 이 한글 율음은 직전에 언해를 하여 반포한 『어제계주 율음』이 번역의 한계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영조가 백성들과의 보다 직접적인 소통을 적극 도모한 결과 탄생하였다. 『어제경민음』의 등장은 한문 공용어 체제 하에 모든 공적 문자 활동은 한문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조선 사회에서, 한글이 공적 영역에서도 독자적인 소통 수단으로서 그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기 한글의 광범위한 확산과 그 현격히 달라진 문자적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으로 『어제경민음』은 임금 이 백성을 청자로 하여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직설적 표현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특별한 언어 자료로서 영조의 독특한 문체와 표현이 드러난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자료이다.

핵심어 : 율음, 한글 율음, 『어제경민음』, 『어제계주율음』, 영조, 금주, 공적 문자 활동

---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1. 머리말

이 글은 영조의 한글 윤음 『御製警民音』의 자료적 가치에 주목하고 그 국어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sup>1)</sup> 『어제경민음』은 영조가 백성들에게 禁酒를 촉구하기 위해 1762년(영조 38) 한글로 지어 내린 윤음으로, 현전하는 한글로 된 다른 윤음들이 모두 한문을 언해한 것인데 비해 언해가 아닌 애초부터 한글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경민음』은 그동안 이상하리만치 학계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윤음은 임금이 관료나 백성들에게 어떤 정책을 호소하거나 위무 또는 경계하려 할 때 내리는 訓諭 문서로서, 통치 차원의 공식적인 문서인만큼 한문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언해가 덧붙여져 반포되기도 하였다(이영경, 2013-1: 267).<sup>2)</sup> 현재 전하는 윤음언해는 30여 건으로 대부분이 정조대의 것이고 영조, 순조, 헌종, 고종대의 것이 소수 전하고 있다.

국어학적 측면에서의 윤음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윤음언해 자료의 형태나 표기, 윤음언해 자료를 활용한 통치방식, 정조대 윤음언해 개별 자료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는데,<sup>3)</sup> 이들의 대부분은, 당연한 일이지만, 윤음언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수적으로 가장 많은 정조대의 윤음언해 자료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들어 한재영·심보경(2017)의 『역주윤음언해』 제2집의 출간을 계기로,<sup>4)</sup> 심보경(2018)에서 영조대의 윤음언해가 특별히 주목을 받기

1) 본 연구에서는 한글 윤음으로서 『어제경민음』이 국어생활사·문자사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자료적 가치와 특징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근대국어 자료로서의 『어제경민음』이 보여주는 언어 변화, 양상 등은 본고에서는 논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2) 심보경(2018: 38)에서는 윤음을 왕이 백성과 신하에게 국정운영 방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간행한 ‘국왕의 公文書’라 하였다.

3) 윤음언해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심보경(위의 논문: 38-39)의 분류와 서술을 참고하였다.

도 하였다. 그런데 윤음에 대한 이 모든 국어학적 연구에서 『어제경민음』은 늘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sup>5)</sup> 영조대의 윤음을 각별히 살핀 최근의 논의들에서도 『어제경민음』은 빠져 있다.<sup>6)</sup>

아마도 제목에 “윤음”이란 이름이 붙지 않았고 언해가 아니라 애초부터 한글로 간행된 것이며, 한문본 자체가 없어서인지 실록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그 누락의 이유인 듯하다. 그러나 한글 목활자로 간행된 현전하는 간본을 통해 윤음에 해당하는 글임이 확인되고 『승정원일기』의 관련 기사에 “警民絲綸”으로 명명되어 그 반포 경위와 책 간행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바<sup>7)8)</sup> 마땅히 영조대 윤음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sup>9)</sup> 심보경(2018)을 비롯한 여러 논의에서 선조의 『國文教書』까지 윤음에 포함시켜 함께 다루고 있으면서도 『어제경민음』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명실상부한 한글 윤음이라 할 존재임에도 그 가치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라 하겠다.

『어제경민음』을 윤음으로 인정한다면 그 자료적 가치와 국어사적 의미는 상당

- 4) 『역주윤음언해』는 제1집에 정조대 14편의 윤음언해를 수록하여 2016년 간행되었고, 최근 영조·순조·헌종·고종대의 17편의 윤음언해를 수록한 제2집이 출간되었다.
- 5) 이영경(2013-7)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 6) 영조대의 윤음은 김백철(2011: 49-64), 심보경(앞의 논문: 40) 등에 따르면 270여 편이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자에서는 중복 편수를 포함하여 총 275편이라고 하였고, 후자는 전자에서 『친의소감언해』 『눈음』이 누락되었다고 하였다. 두 논문 모두에서 『어제경민음』은 제외되어 있다.
- 7) “進御後命承旨, 以方音書警民絲綸. 上曰 噫, 酒禁之若是罔效, 寔由否德. … ”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9월 12일 辛未, 필자>
- 8) “絲綸”은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인 ‘詔勅(詔書)’의 글로서 윤음의 다른 이름이다. 심보경(앞의 논문: 40)에 따르면 윤음은 “綸綸, 綸旨, 十行, 絲綸, 德音” 등으로도 명명되었다고 한다.
- 9)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2001),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 語學篇 解説』의 『어제경민음』 해제에서도 “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240쪽)는 언급으로 윤음과 성격이 같지만 온전히 윤음으로 분류하지는 않는 기존의 관행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글 운음의 반포 자체가 조선의 문자 생활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를 함축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문자 생활에서 한문과 언문이 그 사용 영역을 엄격히 구별하여 위계적으로 사용되었던 조선 사회에서, 한글 운음의 반포는 주로 사적 영역에 국한하여 사용되던 언문이 한문과 함께 공적 소통 수단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자신의 사용 영역을 넓혀 가는,<sup>10)</sup> 조선 후기 문자 생활 구도의 변모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언해가 아니라 애초부터 한글로 지어진 이 글은 임금이 백성을 청자로 하여 직접 대화를 하듯이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진솔하고 직설적 표현으로 자신의 뜻을 간곡히 전달하는 매우 독특한 언어 자료이다. 언어적 측면에서도 문체나 문장, 표현 등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흥미로운 자료로서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어제경민음』의 자료적 가치를 재조명해 보고 그 국어사적 의미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어제경민음』은 “禁酒”라는 동일한 주제로 직전에 반포된 영조의 또 다른 운음(언해)인 『御製戒酒繪音』과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관련되면서 비교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운음의 반포 과정과 성격, 언어적 특징 등 많은 부분에서 두 자료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한 차이가 『어제경민음』의 자료적 특성과 독특한 가치를 잘 드러내는 의미 있는 사실들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많은 부분 『어제계주운음』과의 비교를 통해 진행될 것임을 밝혀둔다.<sup>11)</sup>

10) 주지하듯이 한글은 창제된 이후에도 한자에 의한 문자 생활을 완전히 대신하지 못하였으며, 공적인 문자 생활은 여전히 한자로 이루어졌다. 한글은 주로 한자나 한문의 학습이나 백성의 교화, 불교의 포교 등을 위한 문헌의 간행에, 그리고 소설 또는 시가의 창작이나 편지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었다(안병희, 2007: 239).

11) 본고에서 활용한 자료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어제경민음』(一叢古349.1-Y43e)과 『어제계주운음』(奎3972)이다.

## 2. 『어제경민음』의 반포 배경 및 경위

김백철(2011: 12-13)에 따르면 ‘윤음’은 조선 전기에는 ‘입금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군주의 下敎나 敎書를 상징하는 일종의 별칭으로 사용되었을 뿐 문서 형식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는데, 영조대 중반 이후 독자적인 문서 형식으로 구축되면서 새로운 국왕의 통치 수단의 일환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영조는 왕명 전달의 공식 수단으로서 전통적인 敎書나 諭書가 있었는데도 재위 30년 이후부터 유독 윤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선호하여 자신의 국정 철학이나 정책 의지 등을 직접 밝히는 국정 운영의 새로운 매체로 삼았다.<sup>12)</sup> 특히 對民 정책에서 백성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윤음을 적극 활용하였다.

영조는 ‘蕩平’, ‘均役’과 함께 ‘節用’을 평생의 국정 운영의 주요 사안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바, 그 일환으로 민간의 사치를 금하고 금주를 독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금주령은 즉위 초부터 언급되었으나 강도 높게 실시되지는 못하다가 재위 30년대부터 강화되어 금주령의 전면적인 단행과 이를 계도하는 윤음을 잇달아 반포하면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sup>13)</sup> 이러한 강력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윤음의 전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된 것이 한글이었다. 1757년(영조 33) 금주령과 그 실천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계주윤음』이 반포되고 이를 한글로 언해하여 그 언해문을 함께 수록한 『어제계주윤음』이 간행되었으며, 이로부터 5년이 지난 1762년(영조 38) 영조가 앞서의 『어제계주윤음』을 상기시키며 백성들에게 금주령을 준수할 것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 한글로 『어제경민음』을 지어 반포하

12) 영조대에 윤음이 국왕의 공식문서로 확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김백철(앞의 논문: 11-48)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13) ‘금주령’은 영조 즉위 중반까지는 가뭄이나 흉수와 같은 재해로 곡식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시적인 정책으로 시행되었으나, 재위 중반 이후 과음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 1755년(영조 31) 금주령을 단행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였다고 하며, 이후 강력하게 추진되던 영조의 금주 정책은 결국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1767년 폐지되었다고 한다(한재영·심보경, 2017: 31).

기에 이르는 것이다.

『어제계주윤음』은 1755년 단행한 금주령의 시행 이유 및 세칙을 알리고 계도하기 위해 1757년 반포한 윤음으로, 영조대에 반포된 270여 편의 윤음 가운데 『闡義昭鑑諺解』(1756)의 「눈음」과 함께 언해가 이루어진 단 두 편의 윤음 가운데 하나이다. 심보경(2018: 42-44)에서는 영조대의 윤음 가운데 이 두 편만이 언해된 데 대해, 『천의소감언해』 「눈음」의 경우 영조가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백성들에게 천명하여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어제계주윤음』의 경우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한 생활을 강조한’ 영조의 국정 철학을 백성들에게 널리 공표하기 위해 언해 및 언해서의 간행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어제계주윤음』의 경우, 蕩平이나 均役, 節用 등 영조의 주요 국정 철학은 이전의 윤음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공표되었다는 점에서 이 윤음만이 특별히 언해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sup>14)</sup> 『어제계주윤음』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직전에 발효된 금주령의 시행 이유와 강력한 처벌 방침을 알리고 그 실천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백성들에게 당면한 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그들이 음주로 인한 엄중하고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계도가 시급한, 백성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다.<sup>15)</sup> 다시 말해 사안의 중대성 및 소통의 질실함에서 그 언해의 이유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한글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의 효율성 증대와 광범위한 확산을 도모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이 『어제계주윤음』의 번역과 전달 효과가 미진함을 언급하며 급기야 한글로 그 내용을 다시금 지어 내린다는 『어제경민음』의

14) 영조의 윤음 현황은 김백철(앞의 논문: 49-64)에서 <부표>로 자세히 제시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그 반포에 대한 기록(시기 및 출처 등)과 주제(내용) 등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바, 영조 9년 『戒奢侈綸音』을 시작으로 ‘절용’에 관한 윤음이 즉위 초부터 수차례 지속적으로 반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5) 윤음에 따르면 금주령을 위반할 경우 “몸이 조관이 된 자와 스즈로 일흠흔 자는 히를 흐치 말고 연히예 귀향보내고 빅성은 강변 칠읍과 북관 룡진과 리부 밧피 공스천 의문 말고 엄형 흐 츠 흐 후 변원의 제 몸 흐흐야 노비를 삼게 호디 비즌 자와 먹은 자를 일테로 룡을 시형호고(32b-33a)”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력한 처벌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간행 이유에서도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어제계주윤음』의 간행 및 그 언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록들에서 자세한 경위를 알 수 있다.

- (1) 上曰, 以戒酒綸音事, 有所下教者, 承旨書之。傳曰, 令芸閣刊印, 京外史庫與內而政府·六曹·京兆·柏府·薇垣, 外而八道·三府, 分藏。出傳教 上曰, 刊印時, 本文則依諺解例, 以諺字懸音懸吐而解則如入啓草本, 勿以眞書相錯事, 分付, 可也 (임금이 말하기를, “계주윤음의 일로 하교할 것이 있으니 승지가 이것을 써라.” 전교하기를, “운각에서 간인하여 경외 사고와 함께 안으로는 의정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사간원에 나누어 소장하고, 밖으로는 팔도와 삼부(개성부, 광주부, 강화부)에 나누어 소장하라.” 임금이 말하기를, “간인할 때에 본문은 언해의 전례대로 언문으로 음과 토를 달고, 언해는 초본을 입계하는 것과 같이 하고, 한문과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11월 3일 辛卯>
- (2) 반야의 글을 지어 아침을 기드려 불러 기유하고 경조로 하야곰 진셔와 언문으로 벗겨서 경외에 효유하라 하노라 <어제계주윤음 32b-33a> [半夜綴文하야 待朝召諭하고 令京兆로 眞諺謄書하야 曉諭京外하라 (16a)]

(1)의 『승정원일기』 기사에는 언해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영조가 앞서 반포한 『계주윤음』의 간행 및 유포와 함께, 간인 시에 언해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윤음의 본문(원문)은 언해하는 전례에 의거하여 諺字(한글)로 음과 토(구결)를 달고 언해는 한문(원문)과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라고 하교하였다는 내용이다. 영조의 명대로 『어제계주윤음』은 한문으로 된 『諭大臣卿宰以下百官綸音』과 『諭京城父老綸音』을 차례로 신고 한글로 독음과 구결을 단 다음, 장을 달리하여 순한글로 언해문(『어제계주륵음』)을 수록한 체재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한문과 언해문이 분책될 수 있는 체재인 것이다. 언해를 포함한 책의 체재와 관련하여 신하들과 상세히 논의를 하는 등 영조는 이 윤음의 언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sup>16)</sup> 이러한 『어제계주윤음』의 언해 양식이 이후 윤음언해의 일반

16)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이러한 사정을 볼 수 있다.

具允明持綸音草進前曰, 綸音題目, 何以爲之乎? 上曰, 以戒酒綸音爲之, 好矣。洪啓禧曰, 日

적인 체제로 정형화되어 정조대 율음언해를 비롯한 후대의 율음언해에 답습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한편 『어제계주율음』 본문에 나타나는 (2)의 기록은 한글로 번역된 율음의 시행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보다 주목을 끈다. 京兆로 하여금 “眞諺謄書” 즉 “진서와 언문으로 벗겨서” 경외에 효유하라고 한 것인데, 이 “眞諺謄書”는 한문과 언문으로 베껴 써서 동시에 유포하라는 의미이다. 즉 율음이 한문과 언해문의 이중언어 텍스트로 동시에 공표되어 유포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제계주율음』의 예는 향후 율음의 시행 과정에서 소위 “眞諺翻謄”이라는 절차가 확립되는 시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율음의 작성 및 시행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한 백두현(2009: 289-290)에 따르면, 율음은 대개 조정에서 한문과 언해문을 간행하여 지방 감영에 배포하고 감영에서 이를 다시 번각 혹은 전사하여 지방민에게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대개 정조대 율음인데 1783년에 반포된 율음언해 『字恤典則』에 “眞諺翻謄”, 즉 “眞書(한문)와 諺文(언해문)으로 쓰고 베껴”<sup>17)</sup> 유포하는 절차가 명기되어 있어 율음의 일반적인 시행 절차를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 “眞諺翻謄”은 (2)의 “眞諺謄書”와 동일한 개

昨得見繪音草本, 以文字懸吐, 而姑未及成矣。上曰, 眞諺書, 何以爲之乎? 啓禱曰, 諺文則以二行刻之, 然後可爲曲盡矣。冊字紙頭井間, 作三層, 當書於極行者, 書於上層, 繪音則始書於中層, 題目則書於第三層, 好矣。上曰, 好矣。(구윤명이 율음 초본을 가져와 앞에 올리면서 말하기를, “율음의 제목은 무엇으로 할까요?” 임금이 말하기를, “‘계주율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홍계희가 말하기를, “어제야 율음 초본을 볼 수 있어서 언문으로 토를 달았으나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자와 언문 쓰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홍계희가 말하기를, “언문은 두 줄로 새겨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책자의 지두에 정간은 삼층으로 만들어, 극행에 써야 할 것은 상층에 쓰고, 율음은 중층에서 시작하여 쓰고 제목은 세 번째 층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11월 7일 乙未>

- 17) 『자훈전칙』의 언해문에서 “眞諺翻謄”은 “진서와 언문으로 씌우고 번역하야(4b-5a)”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번역하야”는 “translation”의 의미가 아니라 “謄寫”의 의미로 사용된 것인바(이현희·이영경 외, 2014: 55-56), “진언번등”은 진서를 언문으로 번역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전달된 한문과 언해문을 나란히 베껴 유포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이현희·이영경 외, 같은 책: 281). 조선 시대의 “翻譯”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현희(2013)을 참고할 수 있다.



념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율음의 시행 절차가 영조대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2)의 기록은 분명히 말해준다. 요컨대 향후 율음의 광범위한 유포를 위해 언해를 하여 한문과 언해문으로 나란히 공표하는 절차가 일반화되는데, 『어제계주율음』이 그 단초를 보여준다는 점은 특별히 주목될 만하다.

『어제계주율음』은 이처럼 “眞諺謄書”되어 유포되었음에도 그 전달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듯하다. 즉 그로부터 5년 후 백성들에게 금주령을 준수할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촉구하는 율음이 반포되는데 이 때 『어제계주율음』 번역의 문제점을 직접 거론하며 아예 한글로 글을 지어내려 반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1762년 간행된 『어제경민음』이 바로 그것인데, 그 간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본문에 나타난다.

- (3) ㄱ. 그러므로 탄일이 흐르밤이 7리왔고 넷날을 생각하옵는 ㅁ음이 근절하되 ㅅ아 자지 못하야 불너 쓰이니 전의 하교한 거술 비록 언문으로 번역하야 반포 하야시나 서어흔 하교를 설게 번역할 제 엇지 ㅅ세하며 ㅅ츠 벗겨 ㅅ을 제 ㅅㅅ 엇지 빠진 거시 업스라 그러므로 이번은 교서관으로 ㅅ아 반포하니 글즈니 분명하야 비록 언문 선류라도 가히 아라볼 거시니 <警民音 7b-8a>
- ㄴ. 이 글은 이전 범연히 번역한 글과 다르니 너희 보기 어렵지 아니하고 ㅅㅅ 가히 잠심홀지라 <警民音 10a-b>

(3ㄱ)에서 ‘이전에 하교한 것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반포한 것’과, (3ㄴ)에서 ‘이전에 범연히 번역한 글’은 바로 앞서의 『어제계주율음』을 말하는 것이다. 『어제계주율음』의 번역이 ‘긴 하교를 서투르게 번역하여 자세하지 않고 베껴서 보일 때 빠진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교서관으로 하여금 ㅅ아서 반포 하였으니 글자가 분명하여 “언문 선류”라도 가히 알아볼 것’이라는 말과, ‘이 글은 이전의 범연히 번역한 글과 달라서 보기 어렵지 않다’는 말에서, 번역문이 내용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애초부터 한글로 율음을 지어 내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승정원일기』 기록을 통해 분명히 확인된다.<sup>18)</sup> 이 기록에는 「경민음」의 작성 및 반포 경위가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18) 『어제경민음』과 관련한 기록은 실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4) ㄱ. 上曰, 北道則酒禁何如? 明鼎曰, 臣以三令五申之法, 申申嚴飭, 今無現捉矣. 藥房提調申晦, 持湯劑以入, 進御後命承旨, 以方音書警民絲綸. 上曰, 噫, 酒禁之若是罔效, 寔由否德. (중략) 先諭此意, 以方音書下. 噫, 予此心爲民苦心, 令芸閣活字, 印布中外, 莫使吾民, 其陷重辟, 亦於海東, 仍使無酒. (임금이 말하기를, “북도는 금주가 어떠한가?” 명정이 말하기를, “신이 세 번 명하고 다섯 번 신칙하는 법으로 신신 엄칙하여 지금은 현착한(현장에서 체포한) 바가 없습니다.” 약방제조 신회가 탕제를 가지고 입시하였다. 진어 후에 승지에게 명하여, 방음으로 경민사륵을 쓰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 금주(령)이 이와 같이 효과가 없으니 이것은 (과인의) 부덕함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중략) 앞서 이런 뜻을 유지하여 방음으로 써서 내렸다. 아, 나의 이 마음은 백성을 위해 고민하는 마음이니, 운각에 명하여 활자로 인쇄하여 중외에 반포하여 나의 백성들이 중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해동에서 곧 술이 없 어지도록 하라.”)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9월 12일 辛未>

ㄴ. 上曰, 此下教欲使愚民, 親切易曉矣, 監董印出, 可也. 仁培曰, 殿下必欲使一民無傷, 實仰聖德矣. 允明讀警民音. 上曰, 讀諸葛表不隕淚, 非人情, 見此文而不感動, 誠非人矣. 上曰, 警民音進上八件, 進御五件, 五部各十五件, 八道監營各二件, 兩都留守·兵水營·三百六十州各驛·各鎮堡, 各一件, 亦令八道監營, 卽爲刊印, 廣布坊曲. 進上件紙地, 一依各司供上日課 頒布件紙品, 一依常日課. (임금이 말하기를, “이 하교는 우민들로 하여금 친절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인출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이 좋겠다.” 인배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반드시 한 명의 백성이라도 상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시니, 실로 성스러운 덕을 우러러 봅니다.” 윤명이 경민음을 읽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인정이 아니듯이, 이 글을 보고서 감동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사람이 아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민음 8건을 진상하고, 5건을 진어하며,<sup>19)</sup> 5부에 각 15건, 팔도의 감영에 각 2건, 양도의 유수(개성, 수원)와 병영, 수영, 360주와 각 역과 진보에 각 1건씩을 (배포하라). 또한 팔도의 감영에 명하여 간인하게 하여 방곡에 널리 배포하라. 진상건의 종이는 하나같이 각사에서 바치는 일과지에 의하고, 반포건의 종이는 상일과지에 의하라.”) <위와 동일>

(4ㄱ)에서 승지에게 ‘方音’으로 ‘경민사륵’을 쓰게 하였다는 내용과, ‘方音’으로

19) 여기서의 ‘進御’는 앞의 ‘進上’과 의미상 중복되며 책의 奉獻과 관련한 기록에서 관례상 대개 ‘進獻’이 나올 자리이므로 ‘進獻’의 誤記로 생각된다. 『승정원일기』의 원문에도 ‘進御’로 되어 있다.

써서 내려 운각으로 하여금 활자로 인출하여 반포하게 하였다는 내용에서, '경민음'은 처음부터 '방음' 즉 한글로 작성되어 반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그리고 그 이유는 '愚民들에게 친절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백성들이 重罪에 빠져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할 것이다. 앞선 『어제계주윤음』에서는 관료와 선비는 귀양을 보내고 백성은 엄형을 가한 후 노비로 삼는다는 처벌 방침이 제시되었는데<sup>21)</sup> 『어제경민음』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정법', '효시' 등 극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알리고 있는바,<sup>22)23)</sup> 이제 금주령의 위반은 백성들의 생사가 걸린 일이었다. 따라서 백성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명심하여 금주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일이 절실하였고 이에 순한글로 윤음을 작성하였다 하겠다. 나아가 그 유포에 있어서도 (4ㄴ)과 같이 배포처, 배포량 등에서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종이의 질까지 지정함으로써 양적·질적으로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간행된 『어제계주윤음』의 경우 언해를 하여 배포함에도 “令芸閣以活字印, 進上三件, 進獻一件, 五處史庫·政府·六曹·京兆·柏府·薇垣·八道·三都頒行, 其餘許其廣布.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10월 29일 戊子>”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배포량과 배포처 등에서 『어제경민음』에 비해 규모가 훨씬 적었던바, 영조가 『어제경민음』의 전파와 확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영조가 금주령의 강력한 시행을 알리고 그 실천을 독려하는 윤음을 반포하면서 전달의 효율성 증대와 광범위한 확산을 위해 언해를 하였으나, 번역의 한계로 인해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판단에 아예 한글로 다시 윤음을 지어 내려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금주 정책을 강력하게 관철시키고자 한 데

20) '方音'은 방언음으로서 백성들의 말 또는 백성들이 사용하는 표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바, 여기서는 '한글'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 앞의 각주 11) 참조.

22) “정법(正法)”은 '사형(死刑)'을 달리 이르던 말이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23) “사장의 정법한 녀슨 제 부모와 처즈를 부르며(5a)”, “빅슈 모년의 무슴 뜻으로 내 격즈를 효시코저 흐리오(6a)”, “이러흔 후의 너희 혹 범흐면 비록 사장에 효시흔 녀신들 엇지 감히 나를 원흐며(8a)” 등의 내용이 보인다.

서 탄생한 것이 한글 윤음 『어제경민음』이었다 하겠다. 자신의 신념이 실린 대민 정책의 실현을 위해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적극적으로 도모한 영조의 강력한 의지가 공문서의 격식 파괴도 불사하는 한글 윤음의 등장을 불러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글이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문자 생활에서 한문이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는 공적 영역을 조금씩 침범하고 있던 당시 조선 사회의 언어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바가 없지 않다. 즉 한글의 확산으로 인한 문자 생활에서의 변화의 기류가 한글 윤음의 등장을 견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 3. 한글윤음으로서의 언어적 특징

한글 윤음으로서의 『어제경민음』은 언어적으로도 독특한 자료이다. 이 글이 한문의 번역이 아니라 처음부터 ‘方音’ 즉 언문으로 작성되었음은 그것이 보여주는 언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어제경민음』의 문장과 문체는 윤음언해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확연히 다르다. 윤음언해는 대개 원문 의존적인 직역의 방식으로 번역되어 문어적이고 경직된 번역체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경민음』은 이러한 번역체의 문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동일한 주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된 『어제계주윤음』의 언해문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 (5) ㄱ. 오호ㅣ라 나의 덕 업스므로써 큰 디위에 이션 지 이제 설흔세 히로디 우호로 능히 선지를 계술치 못흐옵고 아래로 능히 은혜 부옥의 밋게 못흐야 기강이 날로 처지며 민성이 날로 궁흐니 민음이 상히 림턱흐야 못과 굴형애 썩러딤 ㄱ툃지라 <계주윤음 24a-b> [嗚呼ㅣ라 以予否德으로 忝守丕基ㅣ 于今三十有三年이로디 而上不能繼述先志흐옵고 下不能惠究蔀屋흐야 綱紀ㅣ 日墜흐며 生民이 日窮흐니 心常懍惕흐야 若隕淵谷이라 (6b-7a)]
- ㄴ. 오호ㅣ라 내 너의 부모 되얀 지 그 몇히노 이제 삼십 팔년이로디 덕택이 능히 빅성의게 밋지 못흐고 은혜 능히 빅성의게 퍼지 못흐야 경외 빅성이 짓고

로 들닌 듯하니 낮과 밤의 너희를 생각하야도 엇지 막음이 퍼일 때 이시리오  
〈경민음 1a〉

- (6) ㄱ. 이전의 군공의 술을 계치 아니홈미 실로 과공의 허물을 말피아맛거니와 〈계주운음 19a〉 [昔之羣工之不戒酒 | 寔由寡躬之咎 | 어니와 (1a-b)]  
 ㄱ'. 그 허물이 어디 잇는뇨 실로 과공의 잇는지라 〈계주운음 26a〉 [其咎 | 焉在 오寔在寡躬이라 (9a)]  
 ㄴ. 이 다 네 님군의 타시오 이 다 네 님군의 타시나 〈경민음 3a-b〉
- (7) ㄱ. 너희 등이 님금의 령을 좃지 아니하야 빅슈망칠흔 님금으로 하야곰 이곳치 막음을 허비케 하니 〈계주운음 29b-30a〉 [而爾等이 不遵君令하야 使白首望七之君으로 若是費心하니 (13b)]  
 ㄴ. 너희 무슴 막음으로 빅슈의 늘근 님군을 이다지 막음을 쓰게 하느뇨 〈경민음 2b〉
- (8) ㄱ. 이는 곳 나의 가르치지 못하코 빅성으로 하야곰 법의 싸담이라 〈계주운음 20b〉 [此는 卽予 | 不教而令民陷法也 | 라 (2b)]  
 ㄴ. 이는 너희 범흔 거시 아니라 내 너희를 법의 싸지온 거시니 〈경민음 6b〉
- (9) ㄱ. 그 비록 법의 두나 내 엇지 즐겨하리오 〈계주운음 29b〉 [其雖置法이나 予豈樂爲리오 (13a)]  
 ㄴ. 이 법을 쓰는 거시 엇지 즐겨하며 즐겨홈이라 〈경민음 2a〉

위의 (5)~(9)는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어제계주운음』과 『어제경민음』의 문장을 비교 제시해 본 예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어제계주운음』은 대소신료에게 하유한 『諭大臣卿宰以下百官綸音』과 경성의 부로에게 하유한 『諭京城父老綸音』을 차례로 수록하고 언해문을 싣고 있는데, 관료가 아닌 일반의 父老들에게 내린 후자의 내용이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이하며 『어제경민음』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5)는 이 『諭京城父老綸音』과 『어제경민음』의 첫 문장을 비교한 것이다. (5ㄱ)이 '-음' 명사질의 사용이나 '선지', '계술', '부옥', '름턱' 등의 원문 한자어 사용 등으로 대체로 원문의 구조대로 직역의 번역을 한 데 비해, (5ㄴ)은 같은 내용을 어렵고 비유적인 어휘나 표현 대신 간결하고 직설적인 국어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ㄱ)의 '군공', '과공'이나 '...의 허물을 말피아맛다(허물이 ...에 있다)'와 같은 격식적이고 문어적인 표현은 (6ㄴ)에서는 '네 님군의 탓

(+-이-)'과 같이 구어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7)과 (8)은 사동 표현의 예들인데 (7ㄱ), (8ㄱ)이 원문의 '使'와 '令'에 대응하는 '하야곰'이나 '너희 등(爾等)'의 '등', '곳(卽)'과 같은 전이어 성격의 부가적인 어사들의 사용, 원문 구조의 반영 등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사동 구문을 형성하고 있는 데 반해 (7ㄴ), (8ㄴ)은 간결한 장형 사동과 단형사동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9ㄱ)은 전형적인 원문의 축자역을 보여주는데, 이를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으로 의역하면 (9ㄴ)과 같은 문장이 될 것이다. 요컨대, 원문 한자어의 적극적 사용, 전이어와 같은 부가적인 어사 반영, 원문 통사 구조의 수용 등 직역의 번역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어제계주운음』의 문장과 달리 『어제경민음』은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구어적 성격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어제경민음』이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구어적 성격의 문장을 보여주는 것은 왕의 공식 문서로서의 격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왕의 공식 문서는 대개 정형적인 문서식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왕정의 공표 수단인 교서의 경우, 대체로 “教…書” 혹은 “…教書”와 같은 표제가 제시되고 그 내용은 “王若曰”로 시작하여 “故茲教示, 想宜知悉”과 같이 끝맺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교서의 문투식은 운음에도 활용되었다고 한다(김백철, 2011: 15). 정조대 운음의 경우 대개 “諭…綸音”과 같은 표제가 제시되고 “王若曰”로 시작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언해한 운음언해도 대부분 “왕이 이러특시 곁으샤디”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조대 운음은 초기에 이러한 문투식을 몇 차례 따르기도 하였지만 점차 기존의 정형화된 형식에서 탈피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이는 왕이 친히 글을 지어 반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면서 더욱 가속화된다고 한다(김백철, 2011: 35).

『어제계주운음』은 “諭…綸音”과 같은 표제와 함께 앞선 문투식의 일부를 보여준다.

- (10) ㄱ. 오호 | 라 나의 고평과 경지와 나의 빅료는 다 나의 기유흙을 드르라 <계주운음 19a> [嗚呼 | 라 惟我股肱卿宰와 越我百僚는 咸聽予諭하라 (1a)]

- ㄴ. 다 ㅎ야곰 드러 알게 ㅎ노니 생각건대 맛당히 지실홀디어다 <계주윤음 34a>  
[咸使聞知 ㅎ노니 想宜知悉이어다 (18a)]

(10ㄱ)은 윤음의 첫 문장이고 (10ㄴ)은 끝 문장이다. 끝 문장의 경우 “想宜知悉”(“생각건대 맛당히 지실홀디어다”)로 마무리되어 교서의 마감식 일부가 활용되었다. 그런데 첫 문장의 경우는 교서의 서두식인 “王若曰”을 사용하지 않고 “…咸聽予諭”(“… 다 나의 기유흠을 드러라”)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왕의 말을 전한다’는 의미의 “王若曰” 대신 “咸聽予諭”과 같은 표현으로 왕이 직접 지어 開諭하는 글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sup>24)</sup> 이처럼 기존의 정형적인 문투식은 아니지만 왕이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글임을 드러내면서 전술한 마감식의 사용을 포함하여 문서로서의 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문장에서도 1인칭의 “寡躬”이나 “股肱”, “陟降” 등의 격식적인 어휘 사용이나, 한문 문장을 그대로 직역한 전형적인 한문투의 문장, 故事 인용이나 비유적인 표현 등에서 직설적이지 않으면서 격식성과 권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비해 『어제경민음』은 공식적인 왕의 문서로서의 격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 (11) ㄱ. 오호 | 라 내 너의 부모 되얀 지 그 몇히뇨 이제 삼십 팔년이로디 … <경민음 1a>  
ㄴ. 내 빅성과 내 빅성은 그 감동ㅎ며 감동홀지어다 <경민음 10b>

(11)은 『어제경민음』의 첫 문장과 끝 문장이다. ‘윤음’이란 표제도 없고 서두식도 없이 바로 본론이 시작되고 마감식도 기존의 정형적인 문투와는 거리가 있다. 영조는 즉위 중반기 이후 정국이 안정되자 미리 준비해 온 글을 내리기보다 직접 승지가 쓰도록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머릿속의 생각을 즉석에서 쓰게 하

24) 김백철(앞의 논문: 35)에서는 영조대에 처음 御製를 반포할 때 “王若曰”과 같은 문투식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고 하며, 영조대의 윤음은 향후 “왕이 직접 지은 글을 구분이라도 하려는 듯이” 이러한 문투식을 대부분 따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다 보니 그만큼 격식이나 문투는 정형성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김백철, 2011: 35). 『어제경민음』의 경우도 앞의 (3ㄱ)의 “춤아 자지 못하야 불너 쓰이니”, (4ㄱ)의 “進御後命承旨, 以方音書警民絲綸” 부분에서 승지를 불러 그 자리에서 직접 쓰게 하였으며, 그것도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쓰게 한만큼 격식이나 문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술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격식을 차리는 어휘나 표현도 없고 전형적인 한문투의 문장 대신 이 글이 보여주는 직설적이고 구어적인 문장이 이를 잘 말해준다.

『어제경민음』은 번역의 유무뿐 아니라 영조의 독특한 문체와 화법이 드러나는 특별한 언어 자료라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好學 군주로서 君師를 자임하며 자신의 국정 철학이나 학문적 식견 등을 臣民에게 직접 밝히기를 즐겼던 영조의 면모가 자신감 있고 직설적이며 설득력 있는 화법과 문체로 나타난다. 이 글은 우선 첫 문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문장의 상당 부분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다.

- (11) ㄱ. 오호!라 내 너의 부모 되얀 지 그 몇히뇨 이제 삼십 팔년이로디 ... <경민음 1a>
- 나. 무슨 뜻으로 네 덜히던 거시 이제는 더히며 네 조심히던 거시 이제는 방조히뇨 <경민음 2b>
- 다. 너희 ... 무슨 마음으로 닐흔 거의 된 님군이 탄일들의 법쓸 날을 덩히고 이긋게 마음을 쓰게 하느뇨 <경민음 3a>
- 르. 빅슈의 늘근 부모를 마음을 쓰게 하는 거시 올흐나 칠순 갓가온 부모를 마음을 쓰게 하는 거시 올흐나 탄일이 밤이 ㄱ린 부모를 좀자기를 닛고 잊지 지 마음쓰게 하는 거시 올흐나 <경민음 8a-b>
- ㅁ. 이를 보면 전의 밋던 마음이 내 스스로 잊지 붓그럽지 아니하라 <경민음 3a>
- ㅂ. 너희 만일 즈세히 몰나 법을 범하면 내 빅슈 모년의 어니 늦츠로 너희 모든 빅성을 더히리오 <경민음 6b>

(11)과 같은 의문문들을 통해 일방적인 훈계나 명령이 아니라 글의 독자를 청자로 하여 대화하듯이 보다 가깝게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전달과 訓諭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글의 독자인 백성들을 직접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간곡하게 임금의 뜻을 전달하는 데 의문문이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특히 (11ㄷ-ㄴ)과 같은 수사의문문의 사용이 매우 빈번한바, 수사의문문을 통해 표면적인 표현과는 다른 언표내적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보다 강하고 설득력 있게 임금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sup>25)</sup>

보다 강하고 설득력 있는 의사 전달을 위해 의문문의 사용 외에 다음과 같은 표현들도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 (12) ㄱ. 이 법을 쓰는 거시 엇지 즐겨하며 즐겨홈이라 <경민음 2a>  
 ㄴ. 이 다 네 님군의 타시오 이 다 네 님군의 타시나 <경민음 3a-b>  
 ㄷ. 심흐다 술이며 심흐다 술이며 <경민음 10a>  
 ㄹ. 그 엇진 므옵이며 그 엇진 므옵고 <경민음 10a>  
 ㅁ. 내 비록 보지 못흐고 듯지 못흐나 보는 듯흐고 듯는 듯흐니 <경민음 1b>  
 ㅂ. 내 빅성과 내 빅성은 그 감동흐며 감동홀지어다 <경민음 10b>
- (13) ㄱ. 조선의 술은 결단하야 업시치 아니치 못홀 거신 바이라 <경민음 3b>  
 ㄴ. 조선의 술이 업지 아닌 전은 이 므옵이 녹지 아니홀 거시니 <경민음 8b>

(12)는 반복 표현으로, 동일어구나 절을 반복하는 문장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흔히 운문에서 반복법은 의미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흥취 혹은 리듬을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반복 표현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강조하면서 글을 보다 생동감 있게 하는 효과가 수반된 것으로 생각된다. (13)은 이중부정 표현이다. (13ㄱ)은 일견 삼중부정처럼 보이지만 ‘업시

25) 심보경(앞의 논문, 2018)에서는 영조대 운음언해인 『천의소감언해』, 『높음』과 『어제계주 운음』의 통사적인 특징으로 수사의문문구문, 동일어구반복구문, 화법동사구문이 생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들며, 수사의문문구문의 경우 영조가 자신의 입장을 청자인 백성 및 신하에게 수사의문문 형식을 빌려 표현함으로써 간접화행을 극대화하여 긍정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것으로, 동일어구반복구문의 경우 영조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선행절과 후행절에 동일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언해에서뿐만 아니라 한글문서인 『어제경민음』에서도 이러한 의문문의 사용이나 동일어구 반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영조의 특징적인 화법과 문체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치'가 '없애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중부정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의 효과를 의도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역시 임금의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할 것이다.

#### 4. 한글운음의 국어사적인 의미

전술한 바와 같이 운음은 영조대에 국정 운영의 새로운 매체로 확립되었다. 영조는 왕명 전달의 공식 수단으로서 전통적인 교서나 유서가 있었는데도 유독 운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선호하였다. 특히 대민 정책에서 백성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운음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영조의 운음을 통한 민과의 직접 소통의 의지는 한문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었던 통치 차원의 공문서에 한글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조선 후기 문자 생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영조는 통치 기간 동안 많은 한글 교화서들을 간행하는 동시에 자신의 국정 철학이나 학문적 식견 등을 담은 “御製書”들을 직접 저술하고 언해하는 등 한글을 통치에 적극 활용하였는데, 그것이 실제 통치 행위에 직접적으로 구현된 것이 『어제계주운음』이며 나아가 『어제경민음』으로 극대화되었다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제계주운음』은 ‘금주령의 실천을 독려하는’ 내용의 보다 효율적 전달과 광범위한 확산을 위해 한문으로 작성된 운음을 한글로 언해하여 “眞諺翻謄(眞諺謄書)”하는 절차를 거쳐 반포되었다. “진언번등”은 텍스트 수용층 확대를 위해 언해가 필요한 경우 한문 텍스트에 언해문이 보조적으로 덧붙여지던 기존의 언해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의 정책이나 명령을 담은 공적 문서가 한문과 언문의 이중언어 텍스트로 제작되어 동시에 공표되는 것으로,<sup>26)</sup> 이는 한문과

26) 이는 언문 텍스트가 한문 텍스트에 종속되지 않고 그 자체로 자족적이고 독립적인 텍스트가 됨을 의미한다. 앞서 『어제계주운음』의 언해문을 한문과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영조의 명령(앞의 예(1) 참조)과 이에 따른 분책 가능한 체제로의 편찬, 『천의소감언해』, 『중덕신편언해』, 『어제훈서언해』, 『명의록언해』 등 같은 체제로 된(혹은 언해서만 독립적

함께 한글을 왕명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수단으로 삼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백두현, 2009: 290).<sup>27)</sup> 비록 한문이 일차적인 텍스트이고 언문이 이차적인 텍스트지만 두 텍스트가 나란히 제작되어 동시에 유포되었다는 것은, 한문 공용어 체제 하에 모든 공적 문자 활동은 한문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조선 사회에서 한글이 한문과 함께 공적 소통 수단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되기 시작함을 의미하는, 이 시기 문자 생활의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이미 각종 서적이나 글들을 眞諺으로 함께 펴내거나 다양한 문예물들이 이중언어 텍스트로 유통되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sup>28)</sup> 이런 사회 전반의 흐름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통치 문서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어제계주윤음』의 진언번등의 예는 향후 정조대와 그 후대에 율음 시행의 한 절차로 관례화된다.

그런데 영조의 한글을 이용한 통치는 이러한 율음의 언해와 진언번등에 그치지 않는다. 백성들의 생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의 전달에 ‘언해’라는 방식조차도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언급하면서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소통을 위해 마침내 한글로 율음을 지어 내린 것이다. 『어제경민음』의 반포는 왕이 백성을 대상으로 통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 한문의 매개 없이 처음부터 한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의 문자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만하다. 국정 운영에서

---

으로 간행된) 많은 문헌의 등장도 언해문이 한문 원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텍스트로서의 독자성을 갖추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27) 물론 영조 이전에도 왕의 諭示나 명령 등이 언문으로 번역되어 유포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백두현(2001: 207-208)에 따르면 기록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한글 교서는 『성종실록』(성종 3년 9월 7일자)에 보이는, 절검에 힘쓰고 몸소 행하라는 교지를 언문으로 옮겨 중외에 반포하도록 명하였다는 성종의 교서이며, 현전하는 최초의 한글 교서는 1593년 선조가 왜적에게 투항한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내린 “빅성의게 니르논 글이라”라는 제목의 유서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속성이나 공식성에서 영조의 ‘진언번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28) 眞諺 兩本の 제작과 관련하여 『승정원일기』를 검색하면 대략 숙종대부터 관련 기록이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하여 영조대로 갈수록 점차 증가한다. 또한 한문으로 된 문예물이나 私家의 기록물의 언해 및 언문본 간행도 크게 증가한다(이현희·이영경 외, 앞의 책: 289). 앞서 언급한, 분책 가능한 체제로 편찬된 『어제계주윤음』이나 『천의소감언해』 등의 문헌들의 등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한글을 통한 대민 직접 소통을 적극 시도한 영조의 특별한 성향과,<sup>29)</sup> 앞서 반포된 『어제계주윤음』의 후속 조치로도 볼 수 있는 다소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sup>30)</sup> 조선시대를 통틀어 언해가 아닌 유일한 한글 윤음이라는 『어제경민음』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왕의 공식 문서가 한문이 아닌 한글로 작성되어 기존 공문서의 반포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널리 유포된 『어제경민음』의 예는, 한글이 공적 영역에서도 더 이상 한문을 보조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소통 수단으로서 그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는 진언번등에 따른 한문 텍스트와의 동시적 반포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간, 이 시기 한글의 달라진 문자적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한글로 작성된 『어제경민음』은 일반적인 공문서의 경우와 반대로 漢譯의 과정을 거쳐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글로 된 문서가 공식적인 기록물로 남기 위해서는 한문 텍스트로 漢譯되어야 했는데,<sup>31)</sup> 『어제경민음』도 한역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음을 다음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 (14) 上曰, 今番警民音後, 若用法, 則是誠不負於民, 予當廢講矣. 鳳漢曰, 持此不撓, 則可期禁止矣. 上曰, 予以爲, 可恃者民矣, 甚者酒也, 士夫家亦有之云, 予知之矣. 啓禧曰, 使承旨飜易警民音, 謄諸日記, 好矣. 晚·鳳漢等曰, 重臣之言, 是矣. 上曰, 彼重臣, 便是知製教, 飜出, 好矣 (임금이 말하기를, “금번 경민음 이후에 법을 쓰게 된다면, 이것은 진실로 백성들 저버리지 않는 것이니, 나는 講

29) 영조는 한글 윤음 외에도 언문 사용과 관련하여 기존 문자 생활의 관례를 깨는 듯한 사례들을 다수 보여준다. 예컨대 왕실 비빈의 冊文은 女官이 읽어야 하므로 통상(“舊例”에 따라) “眞諺竝書”하여 들여오게 하였던 데 비해, 대행 대왕대비 빈전의 책문을 언문으로 써서 들여오게 하였다는 기록[“命大王大妃嬪殿謄冊哀冊文以諺書書入”(영조실록 33년 5월 5일)] 등이 나타난다(이현희·이영경 외, 위의 책: 312).

30) 『어제계주윤음』 반포 후 5년이나 지난 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 그리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31) 안대회(2006: 212)에서는 언문 텍스트가 한문 텍스트로 번역되는 이유로 한문에 익숙한 식자층을 위한 목적과, 항구적인 기록물이나 공식적인 문예물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을 들었다. 이는 주로 문학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공적 영역에서 드물게 보이는 언문 텍스트의 한역 사례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을 그만둘 것이다.” 홍봉한이 아뢰기를, “이것을 가지고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금지될 것을 기대할 만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백성들은 믿을 만하네, 술이 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대부들도 또한 그런 면이 있다. 내가 그것을 안다.” 홍계희가 아뢰기를, “승지에게 경민음을 번역하여 일기에 베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만과 홍봉한이 아뢰기를, “중신의 말이 맞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 중신이 바로 지제교이니 번역해 내는 것이 좋겠다.”  
 〈승정원일기 1210책, 영조 38년 9월 15일 甲戌〉

경민음 반포 3일 후인 위의 『승정원일기』 기사에는 한글로 쓰인 경민음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諸 日記에 베껴쓰도록 하는 일이 논의되고 있다.<sup>32)</sup> 실제 앞의 (4)의 9월 12일자 『승정원일기』 기사의 “上曰” 이하는 경민음의 내용이 압축되어 한역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이 『備邊司謄錄』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sup>33)34)</sup> 『어제경민음』의 한역은 언문 텍스트가 기록으로 남기 위해 한문 텍스트로 변환되는 사정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이 윤음이 그 공식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글 윤음의 등장은 한글이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던 당시 조선 사회의 언어적 상황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한글은 비록 조선조 내내 한 번도 공식적인 문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지만 창제 직후부터 문자 생활의 지면으로 빠르게 스며

32) 승지로 하여금 번역하여 일기에 베껴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홍계희의 제안에 대해 임금이 知製敎가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을 하고 있는데, 대개 왕을 대신하여 교서와 같은 공식 문서를 신료가 작성할 때, 주요한 교서의 경우 대제학이나 제학이 작성하고 나머지는 지제교가 돌아가면서 작성하였다고 한다(김백철, 앞의 논문: 35).

33) 앞의 (4)에서는 분량 관계상 해당 부분을 생략하였는데(‘중략’으로 표시), 생략된 부분을 아래에 원문만 제시한다.

“上曰, 噫, 酒禁之若是罔效, 寔由否德。雖然頃者蕩滌勤懇下教之後, 尤若是放恣, 可謂寒心。臺臣之請是矣, 故雖定日申飭, 期日不遠, 此心未弛。吁嗟, 未弛者, 非欲施其法, 恐或犯法。靜以思之, 今番雖申下教, 無知下賤, 其何咸知? 雖聞之, 亦何能領會? 理勢固然。其設或今番止息, 利之所在, 而爲復犯, 焉可必也? 昔禹征苗, 其猶逆命, 故益贊禹曰, 至誠感神, 矧茲有苗, 禹乃班師。舜誕敷文德, 舜干戚於兩階, 七旬有苗格, 可見至誠之攸感也。”

34) 전술했듯이 『어제경민음』은 실록에서는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애초부터 한글로 작성된 문서였기 때문에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조대의 윤음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이 책이 늘 누락된 것은 이에서 말미암은 바도 크리라 생각된다.

들기 시작하여 사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다가 17세기를 지나면 서는 한문이 담당하던 공적 영역까지 넘보게 되는데, 『어제경민음』은 이러한 흐름 속에 한글이 마침내 공적 영역에서 독자적인 소통 수단으로 그 효용성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였음을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제경민음』의 반포는 주로 사적인 영역에 국한하여 사용되던 한글이 공적인 영역에서 한자를 대신하여 공식적으로 사용된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것이다.<sup>35)</sup> 이렇게 한글이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문자로서의 지위를 굳혀가는 동안 엄격하고 견고하게 유지되던 한문 공용어 체제는 점차 이완되고 동요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리하여 한글은 이제 문자 생활의 전면에 나설 준비를 하게 되고 마침내 1894년(고종 31) 공식 문자로 선포되기에 이른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한글의 공식적 사용을 선보인 한글 윤음 『어제경민음』은 1세기 뒤의 이 한글공용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 5. 맺음말

『어제경민음』은 영조가 백성들에게 禁酒를 촉구하기 위해 1762년(영조 38) 한글로 지어 내린 윤음으로, 현전하는 한글로 된 다른 윤음들이 모두 한문을 언해한 것인 데 비해 언해가 아닌 애초부터 한글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경민음』은 그동안 학계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영조의 한글 윤음 『御製警民音』의 자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국어사적 의미를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기로 한다.

영조는 왕명 전달의 공식 수단으로서 전통적인 敎書나 諭書 대신 유독 윤음이

35) 바꾸어 말하면 『어제경민음』을 통해 한글이 그 장벽이 높았던 한문 전용의 영역에 일단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라는 형식을 선호하여 자신의 국정 철학이나 정책 의지 등을 직접 밝히는 국정 윤음의 새로운 매체로 삼았다. 특히 對民 정책에서 백성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윤음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자신의 주요 정책이었던 금주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윤음의 전달 수단으로 한글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두 가지의 상이한 방식으로 실현되었는데 하나는 윤음의 언해인 『어제계주윤음』이었고 또 하나는 한글 윤음 『어제경민음』이었다.

『어제계주윤음』은 ‘금주령의 강력한 시행을 알리고 그 실천을 독려하는’ 내용의 보다 효율적 전달과 광범위한 확산을 위해 한문으로 작성된 윤음을 한글로 언해하여 “眞諺書”하는 절차를 거쳐 반포되었다. 한문과 언문으로 베껴 써서 동시에 유포하라는 의미의, 『어제계주윤음』의 “진언등서”는 향후 윤음의 시행 과정에서 소위 “眞諺翻謄”이라는 절차가 확립되는 시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진언번등”은 국가의 정책이나 명령을 담은 공적 문서가 한문과 언문의 이중언어 텍스트로 제작되어 동시에 공표되는 것이다. 『어제계주윤음』의 언해와 윤음언해의 시행 과정은 후대에 典範으로 관계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었다.

『어제경민음』은 이로부터 5년 후 『어제계주윤음』이 번역의 한계로 백성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음을 직접 거론하면서 아예 한글로 다시 윤음을 지어 반포한 것이다.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순한글로 윤음을 작성하고 배포의 규모도 대대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주 정책을 강력하게 관철시키고자 한 데서 탄생한 것이 한글 윤음 『어제경민음』이었다. 자신의 신념이 실린 대민 정책의 실현을 위해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적극적으로 도모한 영조의 강력한 의지가 공문서의 격식 파괴도 불사하는 한글 윤음의 등장을 불러왔다 할 것이다.

『어제경민음』은 언어적으로도 독특한 자료이다. 언해가 아니라 애초부터 한글로 지어진 이 글은 임금이 백성을 청자로 하여 직접 대화를 하듯이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진솔하고 직설적 표현으로 자신의 뜻을 간곡히 전달하는 특별한 자료인데, 이는 유사한 내용의 언해 자료인 『어제계주윤음』과 비교할 때 매우 잘 드러난다. 직역의 번역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어제계주윤음』과 달리 『어제경민음』은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구어적 성격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또한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자 한 전자에 비해 후자는 공식 문서로의 격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한편 다수의 의문문으로 직접 대화의 효과를 기한 점, 수사의문문이나 반복 표현, 이중부정 등으로 강하고 설득력 있는 의사 전달을 도모한 점 등에서 영조의 독특한 문체와 화법이 드러난다는 점도 흥미롭다.

『어제경민음』의 반포는 왕이 백성을 대상으로 통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 한문의 매개 없이 처음부터 한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의 문자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만하다. 『어제계주운음』의 언해와 진언번등도, 한문 공용어 체제 하에 모든 공적 문자 활동은 한문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조선 사회에서 한글이 한문과 함께 공적 소통 수단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되기 시작함을 의미하는, 이 시기 문자 생활의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제경민음』은 이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한글이 공적 영역에서도 더 이상 한문을 보조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소통 수단으로서 그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기 한글의 달라진 문자적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한글 윤음의 등장은 한글이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던 당시 조선 사회의 언어적 상황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한글은 구어에 밀착된 문자라는 이점을 토대로 창제 직후부터 문자 생활의 저변으로 빠르게 스며들기 시작하여 사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다가 17세기를 지나면서는 한문이 담당하던 공적 영역까지 넘보게 되는데, 『어제경민음』은 이러한 흐름 속에 한글이 마침내 공적 영역에서 독자적인 소통 수단으로 그 효용성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였음을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문자로서의 지위를 굳혀가던 한글은 마침내 1894년(고종 31) 공식 문자로 선포되면서 문자 생활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논문투고일(2018. 11. 11), 심사일(2018. 11. 16), 게재확정일(2018. 11. 28)



## 참고문헌

- 권오영, 2000 『영조문집보유해제』, 『영조문집보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백철, 2011 『영조의 윤음과 왕정 전통 만들기』, 『장서각』 26.
- 김슬옹, 2005 『조선시대 언문의 제도적 사용 연구』, 한국문화사.
- 박용만, 2004 『영조 어제책의 자료적 성격』, 『장서각』 11.
- 백두현, 2001 『조선시대의 한글 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92.
- \_\_\_\_\_, 2007 『한글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사람들의 문자생활』, 『서강인문논총』 22.
- \_\_\_\_\_, 2009, 『훈민정음을 활용한 조선시대의 인민 통치』, 『진단학보』 108.
-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2001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 語學篇 解説』.
- 심보경, 2018 『영조대 윤음언해 자료의 간행의의와 통사』, 『어문연구』 178.
- 안대회, 2006 『조선 후기 이중 언어 텍스트와 그에 관한 논의들』, 『대동한문학』 24, 대동한문학회.
- 안병희, 2007 『훈민정음 연구』, 서울대출판부.
- \_\_\_\_\_, 2009 『국어사 문헌 연구』, 신구문화사.
- 이영경, 2013-1 『영조대의 교화서 간행과 한글 사용의 양상』, 『한국문화』 61.
- \_\_\_\_\_, 2013-2 『한자의 그늘을 걷어준 실용서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실용서로 읽는 조선』, 글항아리.
- \_\_\_\_\_, 2017 『조선 후기 순한글본 『소학언해』와 그 언어·문화적 가치』, 『한국학연구』 47.
- 이현희, 1999 『장서각 소장의 영조대 한글 문헌』, 『장서각』 2.
- \_\_\_\_\_, 2013 『현대 이전의 ‘翻譯’과 ‘諺解’에 대한 몇 고찰』, 『한국어문학과 번역』(서울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제2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대 한국어문학연구소.
- 이현희·이영경 외, 2014 『근대한국어 시기의 언어관·문자관 연구』, 소명출판.
- 이호권, 2008 『조선시대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 41.
- 정재영 외, 2000 『정조대의 한글 문헌』, 문헌과해석사.
- 한재영·심보경, 2016 『역주 윤음언해』 제1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_\_\_\_\_, 2017 『역주 윤음언해』 제2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Abstract**

## 『Eoje-Gyeongmineum』 and The Meaning of Hangeul Yuneum

Lee, Yeong-gyeong

This study was to take note of the value as materials of Hangeul yuneum 『Eoje-Gyeongmineum』 and examine its meaning i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Eoje-Gyeongmineum』, which is complete Hangeul yuneum to urge the subjects to stop drinking by King Yeongjo, is a special material in that it was made of Hangeul from the beginning compared that other extant yuneums in Hangeul are translated to Chinese characters to Korean. This Hangeul yuneum was created as a result that King Yeongjo tried to communicate with his subjects more than before because 『Eoje-Gyejuyuneum』 which proclaimed just prior to 『Eoje-Gyeongmineum』 had a limit of translation and consequently a problem of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subjects.

The appearance of 『Eoje-Gyejuyuneum』 means that Hangeul, in the society of Joseon dynasty that Chinese characters dominated the use of official letters as an former character, was accepted the need and utilities as an unique means of communication in public sectors. That is, the appearance of 『Eoje-Gyeongmineum』 shows that there had been a widespread proliferation of using Hangeul and a remarkable elevated status in terms of a letter. On the other hand, 『Eoje-Gyeongmineum』 is an interesting data in terms of seeing king Yeongjo's unique style of writing and expression as a special language resource that a king deliver his meaning to his subjects as a listener with natural Korean sentences and unconventional forthright expressions.

**Key words** : Yuneum (A Type of Official Documents Including King's Instructions), Hangeul Yuneum, 『Eoje-Gyeongmineum』, 『Eoje-Gyejuyuneum』, King Yeongjo, Stop Drinking, The Use of Official Letters